韓國의 自然遺産 現況 및 最近 動向 -天然記念物・名勝-

李 偉樹(前·國立文化財硏究所 自然文化財硏究室長)

1.序

韓國의 自然文化財 保護制度는 1962年 1月『文化財 保護法』이 制定되고. 그에 따라 98件의 天然記念物이 指定되면서 始作되었다. 當時 韓國에는 自然保護와 關 聯된 어떠한 制度도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天然記念物 은 韓國의 自然保護의 代名詞가 되었으며, 生物學・地 質學 등 自然科學者들이 中心이 되어 生物學的 또는 地 質學的 價值에 重點을 두고 指定하였다. 이들은 文化財 保護의 大命題 下에 國家에 의한 嚴格한 保存을 追求하 였다. 당시 文化財保護法은 文化財 保護와 關聯된 경우 다른 法律보다 最優先的으로 適用되는 特別法的 權威를 갖고 있었다. 그 權威는, 예를 들어 文化財委員會가 審 議하는 文化財 指定區域 내의 現狀變更行爲의 結果를 政 府 內의 어떠한 權力도 侵害하지 못할 만큼의 威力을 갖 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環境汚染의 深化에 따른 自然保護 의 重要性이 浮刻되는 社會的 雰圍氣의 힘을 입어 保健 社會部 環境局이 環境廳을 거쳐 環境部로 昇格되기에 이 르렀다. 이 때 環境部 官僚 및 市民運動家들은 自然保護 關聯 業務를 環境部로 一元化 시키려는 論議를 全開하였 고, 天然記念物도 自然保護의 觀點에서 環境部로 移管 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여 그 후 10여 년간 社會的 이슈 가 되었다. 結果的으로는 天然記念物과 名勝은 文化財 로서의 存在價值가 社會的으로 認定되어 文化財廳 所管 業務로 남게 되었으나, 環境 關聯 法律들에 의해 挑戰을 받는 餘波로 각종 法律들의 制·改定 時 文化財의 上位 法的 概念을 認定하지 않으려는 試圖는 現在까지도 이어 지고 있다.

環境部와의 論爭은 自然文化財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課題를 남겨 놓았다. 첫째, 天然記念物과 名勝에서 다루 고 있는 自然物이 과연 文化財인가 하는 疑問이고, 이에 대한 制度的 改善이 必要하다는 認識이 關聯 公務員 및 專門家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둘째, 그 동안 天然記念物과 名勝에 대한 政策은 指定 및 毁損防止를 위한 規制가 中心이었을 뿐 科學的 調査 硏究에 基盤을 둔 管理 政策은 施行되지 않았다. 環境關 聯 專門家들은 이점을 集中的으로 攻擊하였고, 天然記 念物과 名勝의 科學的 管理 政策을 竪立하는 것이 重要 한 問題로 浮上되었다.

셋째. 過去의 權威的 指定과 保護 政策에서 脫皮하여 環境部 및 其他 關聯 部署들과의 共助를 꾀하고, 國民들 의 參與와 共感을 極大化시키는 政策의 必要性이 提起되 었다. 初期의 文化財 保存 政策은 私有財産權에 대한 規 制가 크게 問題되지 않았으나 社會的 認識 變化에 따라 私有財産權 損失에 대한 國民的 共感 및 參與 없이는 文 化財 保存 政策이 施行되기 어렵게 되었고, 關聯 部處들 의 反對 意見도 收斂해야 되는 狀況이 되었다.

2000年代에 들어서면서 위와 같은 問題들을 解決하 기 위한 試圖들이 계속되고 있다. 天然記念物 및 名勝에 관한 政策에서는 國民的 被害를 最小化하고, 住民參與 를 誘導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며, 他 部處와의 業務 遂行 上 差別化를 꾀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그밖에도 "文化財 不法 搬出入 및 所有權 讓渡의 禁止에 관한 協約" 및 "世 界遺産協約"등 國際的인 趨勢에 符合되도록 自然文化 財 制度를 改善하려는 움직임이 活潑하다.

2. 自然文化財의 類型과 指定現況

韓國에서 現在 使用되고 있는 自然文化財란 用語는 法 的 概念은 아니며, 天然記念物과 名勝을 通稱하는 用語 로 理解되고 있다 (표 2). 文化財保護法에서는 有形文 化財, 無形文化財, 記念物, 民俗資料로 文化財를 區分하 고 있으며, 天然記念物과 名勝은 史蹟과 함께 記念物의 範疇에 屬한다 (표 1).

韓國의 天然記念物은 1990년대 初까지 生物・地質・ 動物 等의 分野에서 文化・歷史 等의 人文學的 價值보다 는 自然科學的 價值를 優先으로 하여 指定되어 왔으나, 環境保全 分野의 領域擴張 以後 人文學的 價値가 重要한 價值로서 浮上하게 되었다. 韓國의 天然記念物은 現在 419건이 指定되고 있으며, 分野別 指定現況은 표 3 과 같다.

名勝은 2000年代 以前까지 거의 注目을 받지 못하였 고, 그 指定 件數도 9건에 不過하였다. 그때까지 文化 財廳에서는 天然記念物의 指定과 管理에도 턱없이 不足

표 1. 文化財의 類型

有形文化財	建造物, 典籍, 書籍, 古文書, 繪畫, 彫刻, 工藝品等
無形文化財	演劇,音樂,舞踊,工藝技術等無形遺産
	史蹟:寺址,古墳,貝塚,城址,窯址,遺物包含層等
記念物	天然記念物:動物,植物,鑛物,地質,天然保護區域,自然現象等
	名勝:傳統景觀 및 自然景觀
民俗資料	衣食住, 生業, 信仰, 風俗, 慣習, 衣服, 器具, 家屋 等 國民生活의 推移를 理解할 수 있는 것.

표 2. 自然文化財의 類型

國家指定	定文化財	市・道指	定文化財	埋藏。	文化財
天然記念物	名勝	市・道 記念物	文化財資料	古生物資料	天然洞窟

丑 3. 天然記念物 指定現況(2011年8月17日現在)

		動物										地	質		天然	保護	區域	計				
老巨樹	樹林地	稀貴食物	自生地	分布限界地	棲息地	渡來地	繁殖地	鳥類	哺乳類	魚類	昆蟲類	爬蟲類	海洋動物	飼育動物	地形·地質	化石	天然洞窟	岩石	山岳	海洋	島嶼	419
168	46	19	13	13	9	6	14	26	7	4	3	1	2	4	30	20	18	5	4	2	5	
		259							7	6						7	3			11		

五 4. 名勝 指定現況 (2011 年 8 月 17 日 現在)

歷史・文化景觀	溪谷・瀑布景觀	海岸景觀	山岳景觀	水界	島嶼	火山	河川	植生	計
36	11	9	8	5	4	3	2	2	80

五 5. 天然記念物의 性格別 分類 (2011 年 8 月 17 日 現在)

文	化歷史	史天然	記念	物		生	物科	學天然	記念	物		地	球科	學天然	記念	天然保	計		
宗教性	民俗性	生活性	歷史性	記念性	分類學	分布學	遺傳學	生物相	特殊性	代表性	珍貴性	生物史	古生物	地質史	天然洞窟	自然現象	文化+自然	自然科學	419
19	82	43	11	35	4	45	17	28	3	17	22	7	20	36	18	1	7	4	

하지 못한 狀態였다. 또한 文化財委員會에서도 景觀과 關聯된 專門家가 거의 없어 制度圈 內에서 名勝은 無關

한 行政人力 構造 때문에 國家的 名勝 政策은 竪立조차 心 속에 放置되어 있었다. 名勝은 "史蹟 및 名勝" 이란 名稱으로 묶여있어 주로 考古學・史學・古建築 등에 대 한 關心이 높았고, 景觀的 要所는 附加的으로만 取扱되

었다.

2000年代에 이르러 名勝은 指定을 위한 全國的 基礎 調査가 實施되었고, 指定基準을 再整備하면서 "史蹟 및 名勝"을 "史蹟"과 "名勝"으로 分離하였다. 이렇게 名 勝의 指定과 管理를 單一化함으로써 專門家들의 參與幅 을 넓혔고, 國民的 關心度를 높였다. 그 후 名勝의 指定 件數는 매년 急增하였고, 韓國的 景觀의 保存이라는 命 題로 推進되었다. 2011年 8月 現在 韓國의 名勝은 80 件이 指定되었으며, 指定現況은 표4와 같다.

3. 自然文化財 指定基準

(1) 天然記念物

韓國의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動物과 植物은 1962년 부터 1990년대 初盤까지 生物學的 價值, 稀貴性, 滅種 危機 등의 價値가 優先視되어 指定되었다. 그러나 1990 年代 中盤 以後 環境保全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環境部 가 設立되는 過程에서 環境部 公務員들과 市民團體들은 天然記念物을 環境關聯 分野에 包含시켜야 한다고 强力 히 主張하였고, 그 후 長期間에 걸친 論爭이 벌어졌다. 결국 2006年度에 이르러서야 天然記念物은 文化財로 管理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國家次元의 合意가 이루어 졌

위의 論爭 過程을 거치면서 山林廳 所管이던 滅種危機 의 野生動植物에 관한 管理는 環境部에서 擔當하게 되 었으나, 文化財廳의 天然記念物, 環境部의 滅種危機 野 生動植物의 重複 指定問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實情이 다. 文化財廳은 이들 重複指定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많 은 論議를 進行하였으며, 그 結果 滅種危機와는 관련이 없는 科學的 記念性을 가지거나 文化·歷史的 記念性을 가진 것들을 天然記念物로 指定하여 環境部와의 重複 指 定 問題를 解決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표5와 같이 文 化性과 自然物의 記念的 價值를 浮刻시키려는 天然記念 物 分類方式의 變化도 試圖되고 있다.

또한 天然記念物의 地質分野는 그 동안 洞窟・化石・ 岩石 등의 一部 分野에서만 극히 적은 件數가 指定되어 國民的 關心을 끌지 못하였고, 國家政策으로서도 關心 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文化財 指定基準이 매우 模糊하 게 規定되어 있어 文化財 擔當者들과 國民들의 地質遺 産에 대한 理解度가 낮았기 때문이다. 文化財廳은 2006 년 地質 文化財의 指定基準을 具體化하고, 明確하게 改 正하여 地質 文化財의 指定을 活性化하고자 努力하고 있 다.

■한국의 천연 기념물의 지정 기준

1. 動物

- 가. 韓國 特有의 動物로서 著名한 것 및 그 棲息地 · 繁殖地
- 中. 石灰岩地帶·砂丘·洞窟·乾燥地·濕地·河川· 瀑布・温泉・河口・島 等 特殊한 環境에서 生長 하는 特有한 動物 또는 動物群 및 그 棲息地・繁 殖地·渡來地
- 다、生活・民俗・衣食住・信仰 등 文化와 關聯되어 保存이 必要한 珍貴한 動物 및 그 棲息地・繁殖
- 라. 韓國 特有의 畜養動物과 그 産地
- 마. 韓國 特有의 科學的 · 學術的 價值가 있는 固有의 動物이나 動物群 및 그 棲息地・繁殖地 등
- 바. 分布範圍가 限定되어 있는 固有의 動物이나 動物 群 및 ユ 棲息地・繁殖地 등

2. 植物

- 가. 韓國 自生植物로서 著名한 것 및 그 生育地
- 以一、石灰岩地帶・砂丘・洞窟・乾燥地・濕地・河川・ 湖水, 늘, 瀑布, 溫泉, 河口, 島嶼 等 特殊地域 이나 特殊環境에서 자라는 植物・植物群・植物 群落 또는 숲
- 다. 文化 · 民俗 · 觀賞 · 科學 등과 關聯된 珍貴한 植 物로서 그 保存이 必要한 것 및 그 生育地 · 自生
- 라. 生活文化 등과 關聯되어 價值가 큰 人工樹林地
- 마. 文化·科學·景觀·學術的 價值가 큰 樹林, 名木, 老巨樹, 奇形木
- 바. 代表的 原始林・高山植物地帶 또는 珍貴む 植物 相
- 사. 植物分布의 境界가 되는 곳
- 아. 生活 · 民俗 · 衣食住 · 信仰 등에 關聯된 有用植 物 또는 生育地
- 자. 『世界文化遺産 및 自然遺産의 保護에 관한 協約』 제 2 조에 따른 自然遺産에 該當하는 곳

3. 地質・鑛物

- 가. 地殼의 形成과 關聯되거나 韓半島 地質系統을 代 表하는 岩石과 地質構造의 重要分布地와 地質 境 界線
 - 1) 地板 移動의 証拠가 되는 地質構造나 岩石
 - 2) 地球內部의 構成物質로 解釋되는 岩石이 産 出되는 分布地
 - 3) 各 地質時代를 代表하는 典型的적 路頭와 그 分布地
 - 4) 韓半島 地質系統의 典型的인 地質 境界線
- 나. 地質時代와 生物의 歷史 解釋에 關聯된 主要 化 石과 그 産地

- 1) 各 地質時代를 代表하는 標準化石과 그 産地
- 2) 地質時代의 堆積環境을 解釋하는데 主要한 示相化石과 그 産地
- 3) 新屬 또는 新種으로 報告된 化石 중 保存 價 値가 있는 化石의 模式標本과 그 産地
- 4) 多樣한 化石이 産出되는 化石 産地 또는 그 밖에 學術的 價值가 높은 化石과 그 産地
- 다. 韓半島 地質 現象을 解釋하는 데 主要한 地質構 造・堆積構造와 岩石
 - 1) 地質構造:褶曲,斷層,貫入,不整合,柱狀 節理 등
 - 2) 堆積構造: 漣痕, 乾裂, 斜層理, 雨痕 등
 - 3) 그 밖에 特異한 構造의 岩石 : 베개熔岩 (Pillow lava), 어란암 (Oolite), 球狀構 造나 球果狀 構造를 갖는 岩石 등
- 라. 學術的 價值가 큰 自然地形
 - 1) 構造運動에 의하여 形成된 地形: 高位平坦 面,海岸段丘,河岸段丘,瀑布 등
 - 2) 火山活動에 의하여 形成된 地形 : 단성화산 체, 화구, 칼데라 (Caldera), 寄生火山, 火 山洞窟, 환상 복합암체 등
 - 3) 侵蝕 및 堆積 作俑에 의하여 形成된 地形: 砂丘,海濱, 갯벌, 陸繫島, 蛇行川, 潟湖, 카르스트 地形, 石灰洞窟, 돌개구멍 (Pot hole), 侵蝕盆地, 峽谷, 海蝕崖, 扇狀地, 三 角洲, 砂洲 등
 - 4) 風化作用과 關聯된 地形: 토르 (Tor), 타 포니 (Tafoni), 암괴류 등
 - 5) 그 밖에 韓國의 地形 現象을 代表할 수 있는 典型的 地形
- 마. 그 밖에 學術的 價值가 높은 地表 · 地質現象
 - 1) 얼음골, 風穴
 - 2) 档:溫泉,冷泉,鑛泉
 - 3) 特異한 海洋 現象 등

4. 天然保護區域

- 가. 保護할 만한 天然記念物이 豊富하거나, 多樣한 生物・地球科學・文化・歷史・景觀的 特性을 가 진 代表的인 一定한 區域
- 나. 地球의 主要한 進化段階를 代表하는 一定한 區域
- 다. 重要한 地質學的 過程, 生物學的 進化 및 人間과 自然의 相互作用을 代表하는 一定한 區域

5. 自然現象

觀賞的・科學的・教育的 價值가 顯著한 것

(2) 名勝

韓國의 名勝은 1970年度에 처음으로 指定된 이후 2000년도 까지 9件에 불과하여 國家政策으로서의 位 相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文化財廳은 2001年 度 全國 名勝目錄 作成을 위한 基礎調查를 처음으로 實 施하고, 이 調査를 基盤으로 名勝指定基準의 再定立과 함께 積極的으로 名勝指定을 推進하여 2011年 現在 全 國 名勝의 指定件數는 80件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명승의 지정 기준

- 1. 自然景觀이 뛰어난 山岳・丘陵・高原・平原・火 山・河川・海岸・河岸・島等
- 2. 動物·植物의 棲息地로서 景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植物의 著名한 群落地
 - 나. 審美的 價值가 뛰어난 動物의 著名한 棲息地
- 3. 著名한 景觀의 展望地點
 - 가. 日出・落照 및 海岸・山岳・河川 등의 景觀 眺望地點
 - 나. 亭子·樓 등의 造形物 또는 自然物로 이룩된 眺望地로서 마을・都市・傳統遺跡 등을 眺 望할 수 있는 著名한 場所
- 4. 歷史文化景觀的 價值가 뛰어난 名山,峽谷,海 峽, 串, 急流, 深淵, 瀑布, 湖水와 늪, 砂丘, 河川 의 發源地, 洞天, 臺, 岩石, 洞窟 등
- 5. 著名한 建物 또는 庭園 및 重要한 傳說地 등으로 서 宗教・教育・生活・慰樂 등과 關聯된 景勝地 가. 庭園, 園林, 연吴, 貯水池, 耕作地, 堤防, 浦 口, 옛길 등
 - 나. 歷史·文學·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著名한 傳說地
- 6. 世界文化 및 自然遺産의 保護에 관한 協約 제 2 조에 따른 自然遺産에 該當하는 곳 중에서 觀賞 的 또는 自然의 美觀的으로 顯著한 價值를 갖는

4. 韓國의 自然文化財 懸案

(1) "文化財"用語에 대한 論議

文化財保護法은 天然記念物과 名勝을 法 制定 當時早 터 文化財로 包含하여 保護・管理해 왔다. 그러나 文化 財는 文化的 産物이라는 認識에 따라 1990年代 中盤부 터 2000年代 中盤까지 環境論者들은 天然記念物과 名 勝과 같은 自然物은 文化財보다는 "環境財"의 概念으 로 다루는 것이 妥當하다고 主張하였다. 結果的으로 天 然記念物과 名勝은 많은 社會的 論議를 거쳐 文化財로서 管理하는 것이 妥當하며, 世界的 趨勢와도 符合된다는

論理가 說得力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天然記念物 및 名勝 關聯 專門家들은 自然 物을 "文化財" 로 부르는 것이 一部 不適切한 側面도 있 다는 점을 認定하고, 그러한 不適切性이 文化財 政策의 發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判斷하여 環境財와 區分 될 수 있는 用語를 定立할 必要性이 있다고 主張하고 있 다. 그리하여 "文化財"를 文化遺産과 自然遺産을 포 함하는 "國家遺産"이란 用語로 變更할 것을 要求하였 고, 文化財廳은 優先的으로 文化財의 名稱을 "Cultural property"에서 "Cultural Heritage"로 變更하여, 財 貨的 概念이 강한 "文化財 (Cultural property)" 란 用 語를 "遺産 (Heritage)"의 概念으로 變更함으로써 天 然記念物과 名勝과 같은 自然遺産을 包含시키고, "世界 遺産協約" 등의 國際的 趨勢와 符合되는 "Heritage" 政 策을 推進하고 있다.

(2) 國家政策으로서의 位相定立

現在 韓國의 國家指定文化財인 天然記念物과 名勝은 文化財保護法에 있는 指定基準 조차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市道文化財의 指定도 活性化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全體 自然文化財의 指定件數는 매우 적어 國民的 關心度가 낮고, 國家政策으로서의 位相도 낮은 實情이 다. 指定件數가 적은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天然記念物과 名勝의 指定基準이 不分明하여 國民的 關心度를 低下시키고 있다. 自然文化財 指定基 準이 廣範圍하고 包括的이라서 擔當公務員뿐만 아니라 關聯 專門家들도 어떤 것이 自然文化財의 對象이 되는지 明確하게 理解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自 然文化財 資源이 있어도 이를 文化財로 認識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文化財廳은 自然文化財의 指定 基準을 明確히 하고자 持續的으로 法律改正을 推進하고 있으며, 이러한 努力으로 現在 地質과 名勝 分野에서는 커다란 成果를 거두고 있다. 또한, 動物과 植物分野에서 는 文化的・科學的 背景을 强化한 指定基準이 包含되게 되었다.

둘째, 地方自治團體의 文化財 擔當은 行政職 또는 建 築 關聯 技術職이 맡고 있는 境遇가 많아 自然文化財에 대한 理解度가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循環補職制가 갖 는 잦은 人事移動으로 擔當者들이 自然文化財에 대한 理 解를 深化시킬 時間이 없으며, 이를 補完할 수 있는 制 度的 裝置도 없었다. 이에 따라 文化財廳은 2000年代 初盤早日 地方自治團體 文化財 擔當者들의 非專門性을 補完하고자 各 市道에 自然文化財 關聯 市道文化財委員 會의 設置를 勸獎하고 있으며, 市道文化財委員會에서는 市道記念物의 指定을 活性化하여 國家 및 地域의 自然文 化財 指定件數를 擴大시키고 있으며, 自然文化財에 대 한 市民의 關心을 增大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다.

셋째, 文化財委員會 委員 大部分은 天然記念物을 環 境的・生物的으로만 理解하고 文化的 要所를 考慮하지 않는 專門家들로 構成되어 있어 天然記念物 및 名勝의 指定 多樣性을 低下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文化財廳은 自然文化財 指定基準을 細分化하여 文化. 歷史. 自然史를 포함하는 遺産概念의 指定基準을 强化 하였고, 觀光·歷史·地理學 등의 多樣한 分野의 專門家 들이 文化財委員會에 包含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自然文化財의 分野가 多樣化되었고, 指定件數가 擴大되 는 結果를 가져왔다. 文化·歷史 分野의 導入은 生物 中 心의 環境政策과 差別化되어 部處 간 摩擦을 最小化하였 고, 國家政策으로서의 位相을 確保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3) 住民 및 地方自治團體 參與와 活用政策의 强化

1980年代 初盤까지 韓國은 全國土의 開發이 本格的 으로 進行되지 않은 狀態에서 文化財 指定에 따른 私有 財産의 侵害는 큰 問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地方自治 團體의 權限이 强化되고, 都市産業化가 活潑해지면서 私有財産의 侵害에 대한 國民的 反撥이 深化되어 2000 年代 初盤부터는 私有財産의 侵害를 통한 文化財 指定은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韓國의 文化財 保存 은 絶對保存이라는 概念으로 管理되어왔고, 都市産業化 가 活潑하지 않았을 때에는 住民反對가 거의 없었다. 그 러나 都市産業化가 進行되며, 私有財産의 價值가 上昇 하고, 開發利益에 대한 期待가 增加됨에 따라 天然記念 物과 名勝뿐만 아니라 모든 文化財의 指定 시 利害關係 者들로부터 敵對的 反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文化 財 擔當者들은 民願을 憂慮하여 指定을 回避하거나, 地 方自治團體의 各種 開發計劃을 意識하여 指定을 妨害하 는 境遇까지 發生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自然文化財에 대한 政策은 絶對規制 政策에서 住民에게 惠澤이 가는 政策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自然文化財 保存自體가 어려 운 環境이 되었다.

過去 國家에서는 自然文化財 指定 時 財産權에 關係없 이 指定하면 되었으나, 現在는 文化財 指定 時 私有財産 權 保護를 위해 土地를 買入하거나, 各種 便宜施設을 設 置하는 등 利害關係者들의 同意를 얻는 努力을 하고 있 다. 이과 함께 自然文化財 指定管理 時 地域住民에게 利 益이 갈 수 있도록 하는 事業計劃 竪立, 觀光要素 開發 등 各種 住民 支援 事業을 實施하여 地域民들의 活用 및 呼應度를 높여 나가고자 努力하고 있다. 事例로 名勝으 로 指定된 南海 다랑이논마을은 指定 當時 住民들의 積 極的인 反對가 있었으나, 다랑이논을 維持하기 위한 事 業을 住民들이 直接 施行하게 하여 住民들에게 惠澤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各種 生産品 販賣 및 觀光事業 등 을 支援함으로써 住民들의 自矜心을 높여 文化財 指定에 대한 不滿을 解消하였다.

(4) 國家自然遺産 保存을 위한 硏究體系의 構築

韓國에서 天然記念物과 名勝이 文化財로 指定된 1962年 以後 40餘 年間 自然遺産에 대한 調査 · 硏究를 할 수 있는 機關이 없었기 때문에 自然文化財의 科學的 管理는 不可能하였다. 1990年代 中盤 以後 天然記念物 과 名勝에 대한 社會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天然記念物 과 名勝의 科學的 · 體系的 管理政策의 竪立이 必要해 졌 다. 이에 따라 文化財廳은 2006年 4月 國立文化財研 究所 내에 自然文化財研究室을 設立하고, 天然記念物센 터를 運營토록 하였다.

天然記念物센터는 全國의 天然記念物과 名勝을 調査 硏究하고, 自然遺産에 대한 國民 弘報, 展示, 敎育프로 그램 등을 運營하며, 國家指定文化財와 市道 指定文化 財의 管理에 必要한 資料들을 提供하고 있다.

天然記念物 센터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協助를 통해 全國의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動物死體들을 收集하고 있 으며, 獸醫科學研究所, 大學研究所 등과 協助하여 各種 自然遺産 關聯 硏究를 遂行하고 있다.

또한, 化石 등 地質分野 研究 結果物과 各種 工事過程 에서 發見된 化石들도 埋藏文化財保護法의 規定에 따라 收集하고 있으며, 이들은 天然記念物센터의 硏究資料 및 展示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天然記念物센터는 現在 24名의 硏究員과 13名의 施 設管理要員, 27名의 自願奉仕者들로 運營되고 있으며, 向後 國立自然遺産研究所로 特化하여 文化財廳의 自然 遺産 政策研究機關으로 發展시켜 나갈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5 . 맺음말

韓國의 初期 自然文化財는 주로 生物的 價值, 滅種 危機 與否, 自然科學的 價值에 따라 指定되어 왔으나, 1994年 環境部 設立 등의 政府機能의 變化로 現在는 自 然의 記念物,原生的 文化遺産,歷史的 實證物,自然史 의 證據物, 鄉土的 象徵物, 生物學的·文化的 代表性 등 科學的・人文學的 學術價值가 높은 것들을 對象으로 保 存하려는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韓國의 天然記念物과 名勝의 性格은 다음과 같이 定義 되며, 環境的 概念의 自然物과 差別化된다.

첫째, 感歎과 驚異의 對象으로서 自然의 記念物이다. 둘째, 民族文化 및 精神生活의 母體이다.

셋째, 先祖들이 살아온 모습을 담고 있는 歷史의 實 證物이다.

넷째, 地球生成過程 등 自然史를 밝혀주는 證據物이

다섯째, 住民들의 故鄕에 대한 鄕愁를 끌어내는 鄕土 的 象徵物이다.

여섯째, 地域的 象徵性을 가지며, 自然科學과 文化的 代表性을 가지고 있다.

現在 韓國의 自然遺産 保存의 目標는 文化. 教育. 科 學 등 文化 및 自然史 資料의 保存, 自然文化財를 통한 文化鄕愁 機會의 擴充, 傳統景觀의 保存을 통한 國土景 觀의 特性化 및 活用基盤 構築, 自然文化財 關聯 專門分 野의 學問的 發展 圖謀, 傳統文化 生物資源의 保存 및 活用基盤 構築에 두고 있다.

또한 管理政策에 있어서는 過去의 規制 一邊倒의 政 策을 벗어나, 全國의 自然遺産에 대한 硏究를 强化하고, 住民 및 地方自治團體의 參與를 높여 自然遺産 保存에 대한 國民的 共感帶를 높이는 方向으로 管理政策을 竪立 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老巨樹는 傳統的으로 住民들과 함께 生活해온 文化要素지만, 文化財로 指定 되는 瞬間 住民과 隔離되는 結果를 빚어왔다. 그것은 住 民들로부터 文化財를 隔離시키고, 住民들에게 自矜心을 주기는커녕 엄청난 골칫거리로 남게 하여 文化財 指定에 대한 住民들의 極烈한 反撥만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文化財廳은 老巨樹 周邊을 마을公園化하거나, 마을整備 事業을 支援하는 등 住民들의 마음이 天然記念物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不斷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發 想의 轉換은 政策 擔當者들이 國民들에게 支持받지 못하 는 文化財는 결국 國家의 遺産이 될 수 없다는 哲學的 基 盤에 따른 것이다.

【참고문헌】

- 1) 문화재청 (2011):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 2) 문화재보호법 훈령 (2009):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보존관 리지침
- 3) 이 위수 (2009): 「한국 명승의 현황 및 전망」, 『국 제학술 심포지엄 - 명승의 현황과 전망』, 국립문화재 연구소, p.p. 291-320